

2026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법인 광산장학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6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I. 선발개요

가. 선발인원 : 145명(예정)

(단위 : 명)						
구 분		계	학교밖청소년	중·고	전문대	종합대
계		145	10	10	30	95
우수 장학생		35	-	-	10	25
일반 장학생		60	-	-	10	50
특정 장학생	다자녀	16	-	-	6	10
	다문화	7	-	-	2	5
	북한이탈	7	-	-	2	5
특기 장학생		10	-	10	-	-
학교밖청소년 장학생		10	10	-	-	-

나. 장 학 금 : 중·고생·학교밖청소년 50만원, 전문대 150만원, 종합대 200만원
다. 선발절차

- 선발공고 및 신청접수 : '26. 8. 24. ~ 9. 18. (26일간)
- 심사위원회 개최 : '26. 10. 19. (예정)
- 이사회 의결 : '26. 10. 30. (예정)
- 최종 선정 발표 : '26. 11. 3. (예정)
-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 '26. 11. 20. (예정)
- 장학금 지급 : '26. 11. 30. (한)

※ 선발인원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발표는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개별통보X)

II. 장학금 신청

가. 신청접수

- 기 간 : '26. 8. 24. ~ 9. 18.(26일간)
-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우편접수(제출 서류는 원본에 한함)
 - 방문접수 : 평일 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제외)
 - 우편접수 : 9월 18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신 청 서 :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 ※ 광산구 소개 - 광산장학회 -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 접 수 처 :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960-79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광산구청 6층

나. 신청자격

- 지원자격 : 공고일('26.8.24.) 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혹은 그 주민의 자녀로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청소년

다. 신청요건

【우수 장학생】 : 성적 100(대학 70 + 수능 혹은 고교 30)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5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2등급 이내

【일반 장학생】 : 성적 50(대학 40 + 수능 혹은 고교 10) + 소득 50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0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6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6년 1월 ~ 7월)

【특정 장학생】 : 성적 50(대학 40 + 수능 혹은 고교 10) + 특정 50

① 다자녀가정 장학생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0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신청자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가정)의 학생

② 다문화가정 장학생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0점(4.5점 만점 기준) 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 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③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0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직계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의 학생

【특기 장학생】 : 성적(중·고교) 30 + 특기 60 + 소득 10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5.8.25.~'26.8.24.) 개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후원한 전국 혹은 국제대회 출전하여 개인 부문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중·고등학생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6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6년 1월 ~ 7월)

【학교밖청소년 장학생】 : 성적(검정고시) 50 + 소득 5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 '25~26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6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6년 1월 ~ 7월)

라. 제외대상

- 대학생 중 2026년도 2학기 휴학 예정자 혹은 2026년 2학기 기준 11학점 이하 이수자
- 우수 장학생 중 2026년 2학기 기준 타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자
- 2026년 1월 ~ 8월내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자

Ⅲ. 선발기준

가. 우수·일반·특기·학교밖청소년 장학생 : 각 분야 신청요건 참고

나. 소득 점수 산출 기준 : 2026년 중위소득 100% (붙임 3 참고)

다. 특정 점수 산출 기준

- 다자녀가정 : 신청자의 형제·자매 인원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 다문화·북한이탈주민가정 :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라. 타 기관(한국장학재단 등) 장학금 중복

- 우수 장학생 : 등록금 지원 장학금으로, 중복 시 수령액 제외한 차액 지급(차액이 500천원 이하이거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받았을 경우 제외 대상)
- 그 외(일반·특정·특기·학교밖청소년) 장학생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중복 여부 및 등록금 범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마. 기타 고려사항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5.8.25.~'26.8.24.)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점(가점)
* 가족명의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
- 2026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 선발 1회당 3점(감점)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대학)우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저학년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 점정고시 점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학교밖청소년에 한함)

Ⅳ. 참고사항

-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26.8.24) 이후 발급한 원본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서류착오 제출(누락) 및 공고 내 안내 사항 미확인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됨
-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문의 : (재)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제 출 서 류 목 록

01.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별지1]
02. 광산구 거주중인 직계가족(혹은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각각 1부
 - 세대원의 전입일 / 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발급
 - 부·모·학생 중 광산구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람 명의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0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0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고교성적증명서 중 택일하여 1부
05. 대학교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1부
06. 재학증명서 1부
07.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붙임 3 참고)
 - 2026년도 기준, 직계가족(부·모 또는 배우자)포함
 - 부·모가 맞벌이일 경우 부·모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
 - 부·모가 가족의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실제 납부자의 명의로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본인·배우자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
08.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09. 2026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10. 2026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확인서 혹은 비수혜확인서 1부
 - 장학금 수혜받았을 시 장학금명 기재 필수
 - 학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2]를 작성하여 제출(직인 필수)
11. 수상실적증명 자료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12. 학교장 추천서 1부
 - 학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3]를 작성하여 제출(직인 필수)
13. 외국인 확인서류 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귀화 시 : 기본증명서
14.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15. 2025~26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16. 제적증명서 1부
1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별지4]
18. 신청인 서약서 1부 [별지5]
19.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미성년자는 부·모 통장, 대학생은 본인 통장 제출

□ 서류 제출 안내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6.8.24.) 이후 발급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공통 서류와 더불어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함

공통 서류 서류 번호	분야별 서류		
	선 발 분 야		서류 번호
01, 02, 03, 17, 19	대학생	우수	04, 05, 06, 09, 10, 18
		일반	04, 05, 06, 07(혹은 08), 09
		특 정	다자녀 04, 05, 06, 09, 신청자 형제·자매 재·휴학, 재적 증명서
			다문화 04, 05, 06, 09, 13
			북한이탈 04, 05, 06, 09, 14
	중·고교생	특기	06, 07(혹은 08), 11, 12, 신청자 중·고교 성적증명서
	학교밖청소년		07(혹은 08), 15, 16

□ 발급방법

발급기관	서 류 종 류	발급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 주민등록등·초본 (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모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기본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특정장학생 : 다문화)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특정장학생 : 북한이탈가정) -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학교밖청소년)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해당학교	- 성적증명서(전체학기) ※ 중·고등 성적증명의 경우 2003년 1월 이전 졸업생은 온라인 발급 불가 - 중·고교·대학 재학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2026년 2학기) - 장학금 수혜확인서 및 비수혜확인서(2026년 2학기) - 제적증명서 (학교밖청소년)	정부24, 학교홈페이지, 해당학교 방문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026년도 1월 ~ 7월)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온라인, 팩스, 건강보험공단방문
한국교육과정 평 가 원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홈페이지

Q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입니다. 2026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우수 장학생 장학금은 타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장학금 지급 시 타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단, 2026년 2학기 기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받았을 경우 선발 제외되며 우수 장학생 외의 장학생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수령여부와 관계 없이 선발됩니다.

Q2. 성적 자격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대학성적과 수능성적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신청 가능하나 심사 시에는 **대학성적과 수능성적 모두 반영**합니다.

Q3. 학생은 타 지역, 부모님은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출 서류는?

A3. (재)광산장학회에서는 광산구에 현재 거주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 한하여 장학생 선발합니다.

학생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부모님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 때에는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5년)을 함께 제출바랍니다.

Q4. 서류는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A4.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Q5. 한 가정에 대학생이 두 명 이상인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재)광산장학회에서는 더 많은 주민에 장학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1세대 1인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Q6. 부모님께서(또는 본인이) 광산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출연자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A6.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하였을 시, 본인 명의 1구좌(5만원)당 0.3점 가점이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출연하였다면 가족 관계증명서와 입금내역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셔야 합니다.

붙임 3**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값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기간: 2026. 1월 ~ 7월 /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65,000	92,428	20,073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 출처 : 보건복지부